

체육진흥기금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21.09.24.

개정 2023.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중의 기금
2. 독지가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사용) ① 조성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타 운영수익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함을 원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 등 운영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 및 대회운영 지원
2.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의 활성화 사업, 체육장학사업 등
3. 체육회 운영비 등

③ 기금은 규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명목으로 대여하거나 일시 전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예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에 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한다.<개정 2023.05.19>

1. <삭제 2023.05.19>
2. <삭제 2023.05.19>
3. <삭제 2023.05.19>
4. <삭제 2023.05.19>
5. <삭제 2023.05.1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사항
3. 기금증식을 위한 국·공채 매입 등 자산취득에 관한사항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사정족수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회의 의견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하며, 경미한 사항은 회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9조(회계관계직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을 기금관리원, 회계업무 담당부장을 분임기금관리원으로 지정한다.

제10조(기금운영계획) ①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기금운영계획 및 변경시에는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방법 및 규모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계검사) 위원장은 기금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감사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부 등 비치) 기금관리원은 기금의 사용, 출납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예치증서 및 통장
3. 현금출납대장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보고)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사항과 집행사항은 차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기금관리 등 회계관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23.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